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위원회 규정

제정 2008. 10. 28. 의학전문대학원 규칙 제 5호  
개정 2010. 10. 14. 의학전문대학원 규칙 제11호  
개정 2018. 4. 13. 의학전문대학원 규칙 제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제16조에 의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의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원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학교육실장, 임상의학 주임교수, 임상수기센터장,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연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상실습과 관련된 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임상의학 주임교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임상수기센터장이 된다.

제4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임상실습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소위원회는 부여한 임무를 완료한 날에 자동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설치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업 및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 또는 심의한다.

1. 임상실습 과정의 기획, 개편에 관한 사항
2. 임상실습 계획표 작성

3. 임상수기 수첩 작성
4. 임상실습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의 자문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학교 당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교실 또는 학교 당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유지하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10. 28. 의학전문대학원 규칙 제 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4. 의학전문대학원 규칙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3. 의학전문대학원 규칙 제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